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97
------------	-------

발의연월일 : 2019. 5. 30.

발의자 : 오영훈 · 이개호 · 우원식

강창일 · 황주홍 · 이찬열

정세균 · 손금주 · 김현권

정인화 · 김진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검사를 통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종자시료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되고 종자판매상이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수입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할 경우 해당 종자를 이용하는 국내의 생산농가가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득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종자시료”를 “종자시료와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u>종자시료</u>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1. · 2. (생 략) ② ~ ⑤ (생 략)</p>	<p>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① ----- ----- ----- ----- ----- <u>종자시료와</u> <u>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u> <u>음을 입증하는 농림축산식품부</u> <u>령으로 정하는 자료-----</u> -----. ----- ----- -----.</p> <p>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